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Partner Organization of IOM

MRTC 통계브리프 | No. 2024-06

국내 유학(D-2) 출신자와 그 가족 추이 (2009~2023)

현채민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생
최서리 이민데이터센터장
이창원 정책연구실장

이번 통계브리프는 국내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떻게 국내 체류하고 있는지, 유학생의 가족은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국내 체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기본통계」는 외국국적 학위과정생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미상(정보를 알 수 없음)의 비율이 높아 사실상 정책적으로 활용도가 낮다. 현재 대중에게 공개되는 법무부 통계를 통해서는 국내박사 영주(F-5-15), 잠재적 우수인재 거주(F-2-7S) 등 유학생 출신자에게 해당되는 체류자격 등을 통해 일부의 현황만을 파악할 수 있기에, 이 통계치로 유학생 출신자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학생 가족의 현황 역시 통계관리 상의 한계로 인하여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취업 및 정착 유도)를 고려할 때 유학생 출신자와 유학생 동반자(배우자, 자녀)의 통계 생산과 활용이 더욱 필요한 때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해외의 사례를 소개한다.

통계분석 대상 및 내용

이 통계브리프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유학생 관련 통계브리프(현채민 외, 2024)의 후속 작업으로, 국내 유학(D-2) 출신자와 그 가족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학위과정에 있는 유학생의 졸업 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을 활용한다.[1]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은 유학생을 비롯한 등록외국인의 현황을 체류자격 세부약호별로 보여주고 있어 '유학'과 관련이 있는 여러 외국인 집단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떻게 국내 체류하고 있는지, 유학생의 가족은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전의 통계브리프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통계를 활용하여 유학(D-2) 자격으로 국내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유학생'으로 칭하고, 교육부 통계를 활용하여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국내 학위과정에

1) 이 두 개 통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현채민 외(2024)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있는 외국인이 대상인 경우에는 '외국국적 학생'으로 명칭한다.

외국국적 학생의 졸업 후 현황 (2010~2022)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향후 계획을 물었을 때 한국에 계속 체류하겠다는 응답이 63.0%로 가장 높았고 이 중 한국에서 취업을 계획한다는 경우가 35.4%, 진학을 계획한다는 경우가 27.4%를 차지하였다. 2020년에도 유학생을 대상으로 동일 질문을 하였는데 당시 한국에 계속 체류하겠다는 비율은 54.7%였고, 이중 취업은 32.7%, 진학 21.6%였다. 한국에 체류하겠다는 비율이 8.3%p 증가하였고, 취업보다는 진학의 비율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유학생들의 계획이 실제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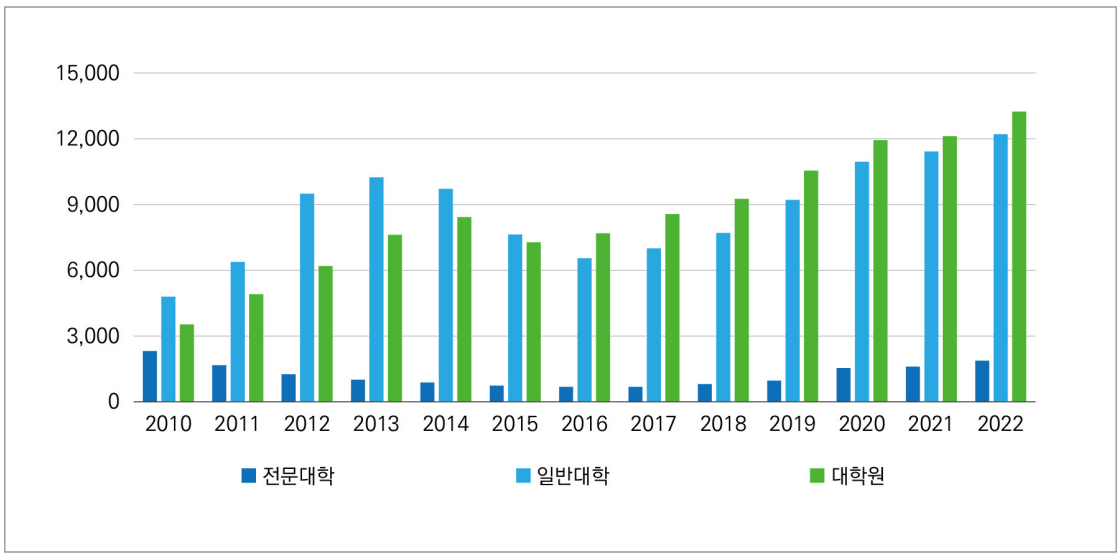
유학생의 졸업 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부의 통계를 살펴보았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를 통해 우선 외국국적 학생의 졸업자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을 제외하고 일반대학과 대학원의 졸업자 규모는 2010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별로 살펴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2010년 2,321명에서 2017년까지 계속 감소하여 최저점(682명)을 찍은 후 다시 증가 추세로 2022년 1,879명이 되었다. 일반대학은 2010년 4,798명에서 2013년 10,238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 6,551명으로 감소 후 반등하여 2022년 기준 12,207명이다. 대학원[2]은 2010년 3,533명에서 2014년 8,429명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음 해 7,276명으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하여 2022년 13,235명이 되었다. 이 수치는 교육부 통계를 활용한 것으로 학위과정에 있는 모든 외국국적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학생(D-2)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통계와 차이가 있다.

또한 「교육기본통계」는 외국국적 학위과정생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통계의 한계는 모든 학위과정에서 미상의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3] 2010년부터 2022년 사이 미상인 비율의 평균은 전문대학은 29.8%, 일반대학은 45.0%, 대학원은 45.5%로 나타났다. 미상을 제외한 외국국적 학생들은 본국으로 귀국하는 비율이 높다. 통계의 한계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전문대학 졸업자는 2013~2019년에는 본국 귀국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0~2012, 2020, 2022년에는 국내 진학, 2021년 한 해만 국내 취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일반대학과 대학원 졸업자는 전체 연도 모두 본국 귀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미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도가 낮은 자료이다.

2) 「고등교육통계」의 경우 외국국적 학생 졸업자에 대해 대학원 학위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
3) 미상인 비율은 전문대학은 29.8%, 일반대학은 45.0%, 대학원은 45.5%로 나타났다.

〈그림 1〉 외국국적 학생 중 졸업자 규모, 201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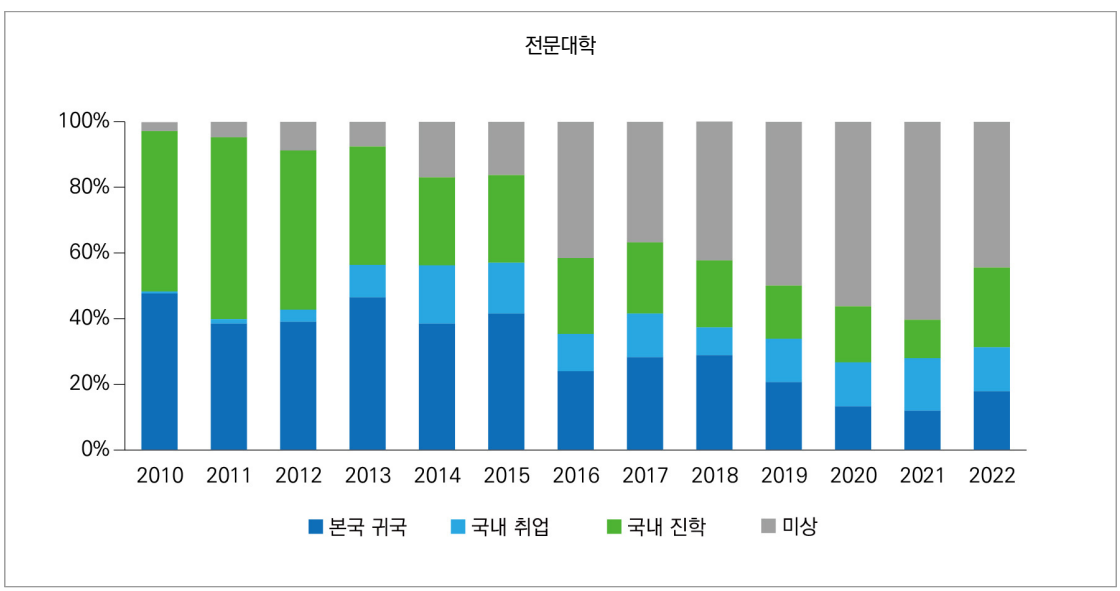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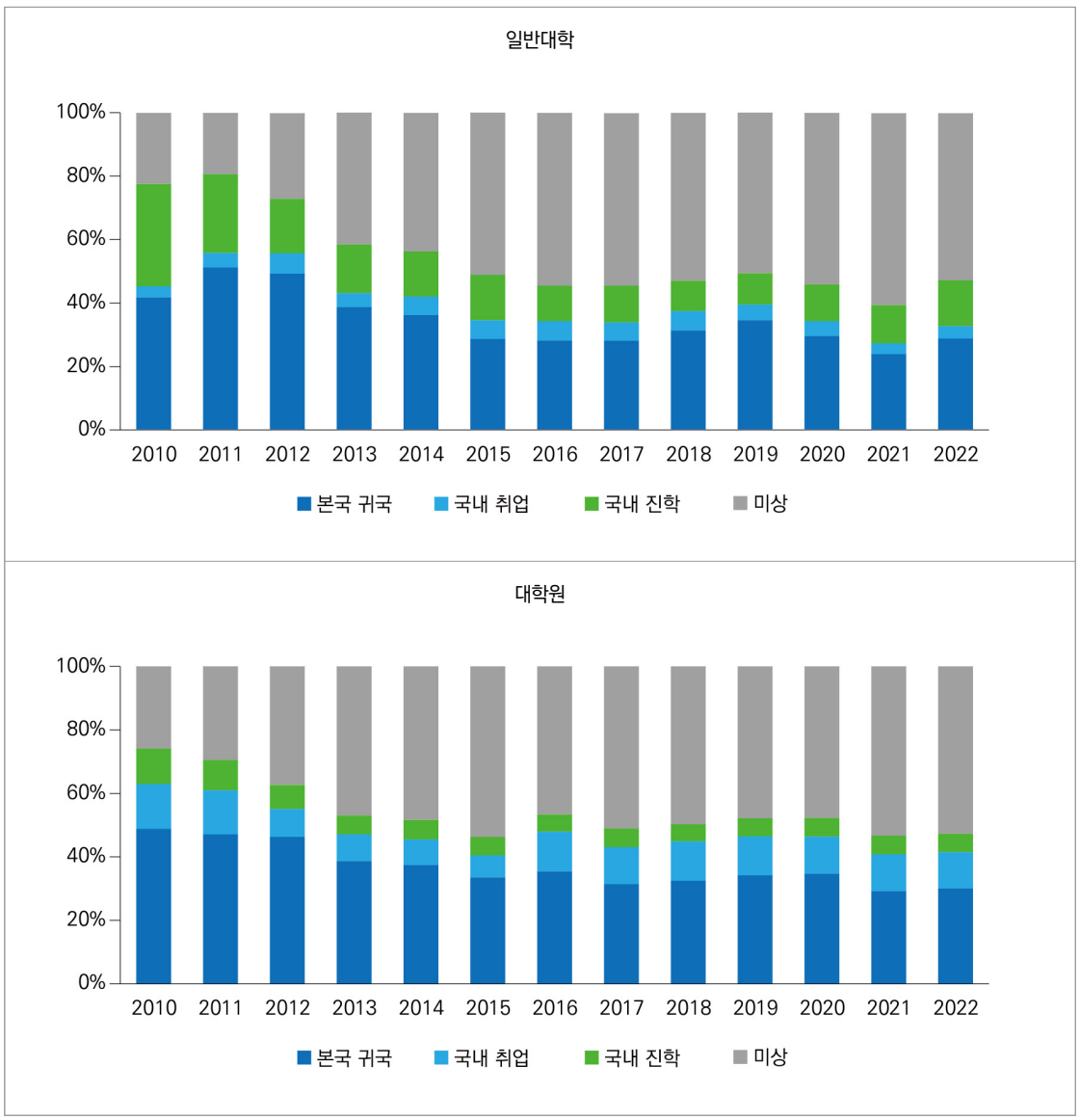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각 연도
주: 각 연도 4월 1일 기준

〈그림 2〉 학위과정별 외국국적 학생의 졸업 후 현황, 2010~2022

단위: %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각 연도
주: 각 연도 4월 1일 기준

유학생 출신자 추이 (2009~2023)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유학생(D-2)은 졸업 후 구직이나 취업,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체류 목적에 맞춰 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하여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하며 체류할 수 있다. 또한 유학생이 학위 취득 후 일자리를 찾은 경우 전문취업 자격[4]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거주(F-2)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통계를 통해서 현재 전문취업, 거주 또는 영주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중에서 유학생 출신을 구분하여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유학생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만을 따로 떼어내어 해당 체류자격 소지자 규모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유학생 출신자의 졸업 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체류자격은 구직(D-10)이다. 유학생만이 구직(D-10)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구직 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 점수제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내 유학이나 한국어능력에 대해 각각 최대 30점, 20점을 부여하고 있어 유학생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국내 구직 자격 소지자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잠시 주춤하였다가 반등하여 202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8년 구직(D-10) 자격의 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직(D-10) 자격은 신설 이래로 두 차례 요건이 변경되었는데, 2015년에 요건이 완화되었고, 2018년 10월에는 위에서 언급한 점수제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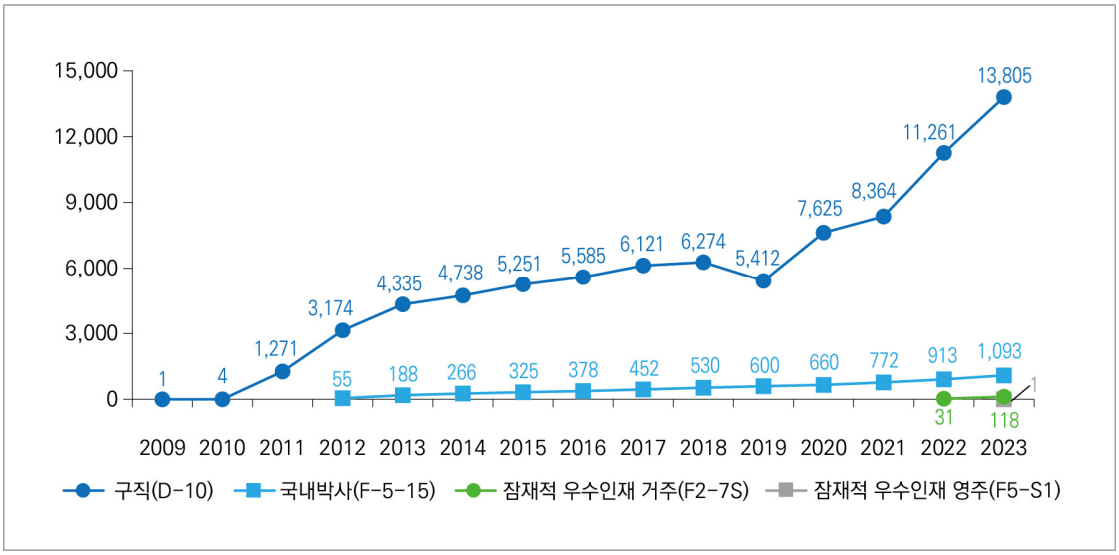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유학생은 국내박사 영주(F-5-1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박사 영주(F-5-15)자격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는 55명이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530명이 되었고, 2023년에는 1,093명을 기록하였다.

2021년 시범사업을 통해 이공계 특성화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취업상태와는 무관하게 거주(F-2-7S)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3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6] 거주(F-2-7S)자격은 2022에 31명, 2023년 118명이 발급받았고, 2023년에는 해당 자격자 중 영주자격(F-5-S)을 취득한 사람도 1명 확인이 된다.

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5)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관련 구직 비자 제도 개선한다" (2018.9.28.)
6)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2023.1.1.)

〈그림 3〉 유학생 출신자 확인가능 체류자격 소지자 추이, 2009~2023

단위: 명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주: 각 연도 12월 말 기준

유학생 가족 추이 (2009~2023)[7]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석·박사 포함)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 중인 유학생은 자신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며[8] 피초청자에게는 동반(F-3-3)자격이 부여되는데, 2024년 3월 말 기준 321명이 해당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지만 실제 유학생의 배우자와 자녀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에서 동반(F-3) 세부자격을 구분한 통계는 2021년(3월 말 기준)부터 제공하고 있으며(이상지·최서리, 2024), 이전의 통계자료에서는 유학생을 포함한 여러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동반(F-3-1)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유학생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규모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없다. 즉, 2021년 이전의 동반(F-3-1) 체류자격 소지자의 규모는 정부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도록 허가한 모든 체류자격 소지자[9]의 피초청자의 규모이며 현재까지 동반(F-3-1) 자격으로 집계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유학생의 배우자

7)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과정에 등록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를 동반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학위과정 유학생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부모에게 부여하는 동반(F-1-13) 자격을 논의하지 않는다.

8)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ko/brd/m_4020/view.do?seq=1234049, 검색일: 2024.06.19.)

9)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239)

및 미성년 자녀는 F-3-1과 F-3-3중 하나의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가 공개하는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동포'의 부모 및 배우자는 방문취업(H-2-2)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자격 소지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1,567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1명만이 그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국내 방문취업자(H-2) 감소 추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대학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D-2)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는 방문동거(F-1-15)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행정통계를 통해서 유학생 부모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2015년 정부는 석·박사 과정에 6개월 이상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를 최대 2명까지 초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10] 그러나 우수인재와 투자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역시 해당 체류자격(F-1-15)을 발급받을 수 있기에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을 통해서 국내 체류하는 유학생과 배우자의 부모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전문)학사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부모를 초청할 수 없었는데, 최근 계절근로자제도를 통해 유학생의 부모가 입국하여 계절근로 활동이 가능해졌다. 2024년 2월 법무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부모를 초청하여, 동일지역에서 계절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하였다.[11]

유학생(D-2) 출신자와 그 가족 통계분석의 정책적 함의

기존의 행정통계를 토대로 국내 유학생 출신자와 유학생의 가족 현황과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행정통계의 개선사항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내 유학생(D-2)의 졸업 후 체류자격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통계」를 통해 외국국적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법무부의 공개된 자료로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중에서 유학생 출신을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무부 통계자료가 통계연보나 통계월보인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유학생 정보는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연도별 증감 추이나 국적 현황 정도이다. 정부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취업 및 정주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들의 취업 및 정착에 대한 적절한 정책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취업비자 요건 완화 학점·자격증 요건 폐지·전공 관련성 인정…구직비자 체류 최대 2년 보장" (2015.2.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91157#goList, 검색일: 2024.0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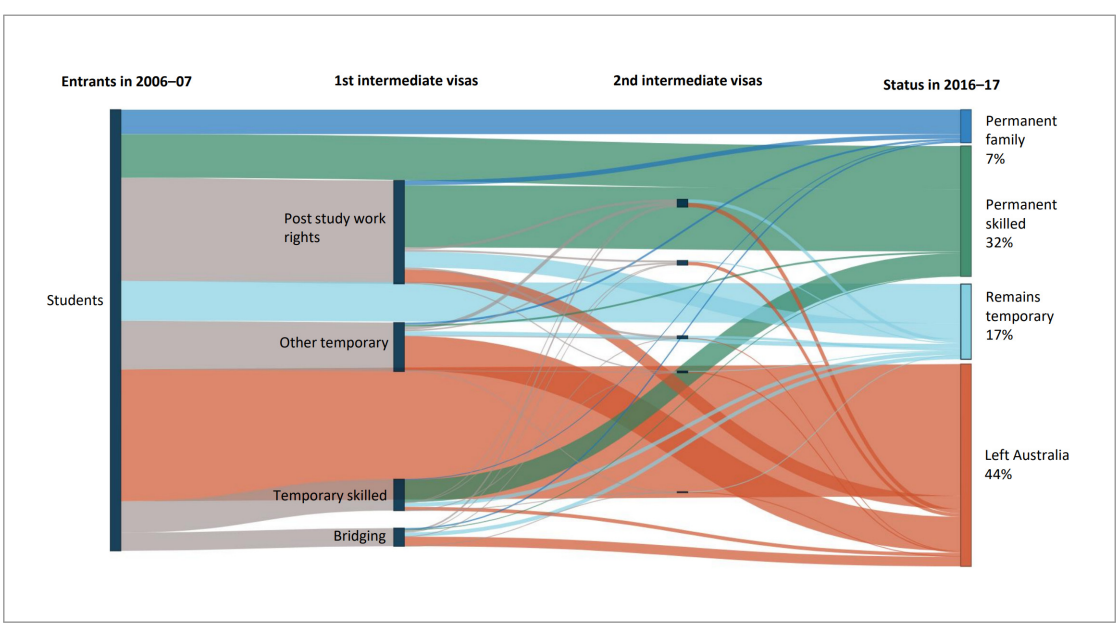
11)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2024.2.25.)

개발을 위해 유학(D-2) 출신자의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 생산이 필요해 보인다.

호주에서는 한시이민자들의 영주자격 취득까지의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데이터를 활용·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림 4〉는 2000년대 중반에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10년 이후에 어떤 자격으로 호주에 머물고 있는지, 혹은 호주를 떠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유학생이었던 사람(103,000명) 중 44%는 10년 이후 호주를 떠난 상태였고, 39%는 영주권을 취득하였다(40,300명). 영주권 취득자 중 절반(50%)은 자신의 역량에 기반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고(Skilled Independent), 17%는 가족 관계에 따라(family). 12%는 고용주 추천에 따라(employer sponsored)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5.6년이었다. 유학생의 17%는 10년 이후에 여전히 한시 비자(기간 제한이 있는 비자)로 호주에 머물고 있었다.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데, 상당수가 호주 대학 졸업생들에게 부여하는 취업비자(post study work rights)를 거쳐 취업 기반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한국 역시 유학생의 취업-정착의 경로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통계의 재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4〉 호주 유학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 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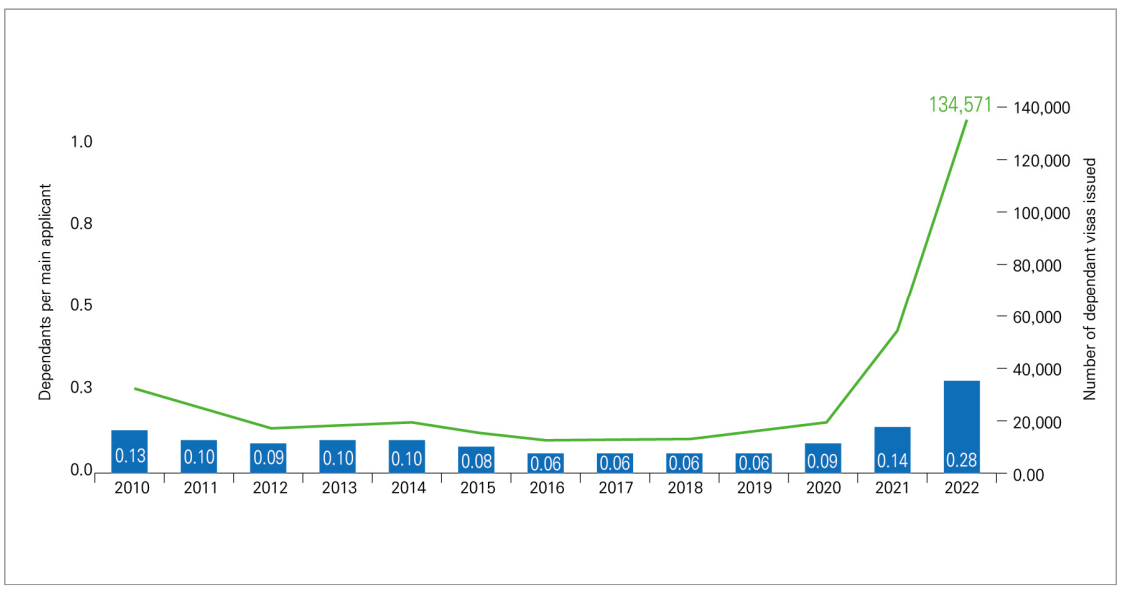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2024)

둘째,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의 기회가 열려있는 만큼 가족을 형성하여 거주하는 유학생 혹은 유학생 출신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한다고 발표했는데, 유학생 및 유학생 출신자 가족 통계 생성을 통해 유학생 유치에 따라 수반되는 외국인 유입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는 외국인 유학생 부모는 물론이고,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정확한 통계 확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래 〈그림 5〉는 영국의 유학생의 동반자(배우자와 자녀)의 전체 규모와 유학생당 동반자 비율의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통계 생산이 가능해야 향후 정책 변화에 따른 외국인 증감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영국 유학생의 동반자 규모와 유학생 1인당 동반자 비율, 2010~2022

단위: %, 명



자료: Cuibus & Walsh (2024)

참고자료

이상지·최서리. 2024. 국내 취업자격 외국인과 그 가족 추이 (2010~2023).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No. 2024-0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05).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현채민·최서리·이창원. 2024. 국내 외국국적 학생과 유학생(D-2) 규모 추이 (2014~2023).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No. 2024-05.

Mihnea V. Cuibus & Peter William Walsh. 2024. "Studnet Migration to the UK," The Migration Observatory.

Commonwealth of Australia. 2024. "Pathways from temporary visas to permanent residency: a case study of migrants that arrived in 2006-07," Centre for Population of Australian Government.

통계정보

활용통계	①「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의 등록외국인 ☞ 등록외국인: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국내 체류할 목적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을 한 외국인 ②「교육기본통계」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학위과정 학생 및 외국 유학생
작성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작성유형	보고통계
공표주기	①「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의 등록외국인: 분기별 ②「교육기본통계」: 1년

집필자 | 현채민·최서리·이창원 **문의** | 02-3788-8031 **발행인** | 우병렬 **발행처** | 이민정책연구원 **발행일** | 2024년 7월
주소 | 08100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신정동) 양천빌딩 별관 2층, 3층
Tel. 02-3788-8000 Fax. 02-3788-8099 www.mrtc.re.kr
인용 현채민·최서리·이창원. *2024. 국내 유학(D-2) 출신자와 그 가족 추이 (2009~2023).*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No. 2024-6. 이민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서울.

본 자료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본 이슈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MRTC)과 국제이주기구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ISSN 2982-9852